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1

17

제출일자: 1998. 7. 11.

제출자: 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교육부의 『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』 ('96.9.2, 교육부예규 제247호)에 의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하고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이장자녀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이장자녀장 학생 선정기준을 종합석차에서 성취도 평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
■ 주요골자

장학생의 자격 중 "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"를 "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3.0/5.0이상인 자(단,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정원의 50/100이내인 자)"로 개정

■ 개정근거

-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('96.9.2, 교육부예규 제247호)
- 경남도 법무 13130-134('98.2.13)호로 개정권고

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전년도 과목별 성취도 평균 평정점이 3.0/5.0이상인 자 (단,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정원의 50/100이내인 자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	개 정
으로 2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.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1. 품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성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실	조(장학생의 자격)